

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

보건복지부 자료제공

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약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소아용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계량컵, 계량스푼 등을 사용할 것

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5조의2(안전용기 · 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)

- ① 법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안전용기·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약품조제용은 제외한다.
- 1. 1회 복용량이 철로서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또는 그 염류가 함유된 경구로 투여되는 의약품 (이하 "경구용의약품"이라 한다)
 - 2. 아스피린 함유 경구용의약품
 - 3. 낱알모음포장 또는 1병중 아세트아미노펜으로서 1그램 초과 함유 경구용의약품
 - 4. 낱알모음포장 또는 1병중 이부프로페으로서 1그램 초과 함유 경구용의약품
 - 5. 어린이의 연령별 용법 · 용량이 설정된 내용액제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5세이하 어린이가 일정 시간내에 개봉하기 어렵도록 설계·고안된 용기 또는 포장 등 을 사용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5조의2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용기·포장대상품목중 제1항제2호의 품목과 경구용의약품중 내용액제를 제외한 품목은 2006.11.11부터 시행한다.

별표 6 Ⅱ. 개별기준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월표 6 Ⅱ. 개월기군 세25. 25. 의약품등의 제조업자	법 제30조제3항,법	<u>-1</u>			
가 의약품등의 제조관리 의무 또는 생산관리 의무	제31조제1항,법제 34조(시행규칙 제				
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가. 제40조제1항(제4 호·제8호·제11호 및 제17호를 제외한다)의 규 정에 위반한 때	40조)	전제조업무정지 또 는 당해품목제조업 무정지 3월	전제조업무정지 또는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6월	업허가 또는당해 품목허가 취소	
나. 제40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위반한 때		당해품목판매업무 정지 1월	당해품목판매업 무정지 3월	당해품목판매업무 정지 6월	당해품목 허가취소
다. 제40조제1항제8호 의 규정에 위반한 때		당해품목 허가취소			
라. 제40조제1항제11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위반 한 때					
-제품표준서·제조 관리기준서·제 조위생관리기준서 또는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·비치하지		전제조업무정지 또 는 당해품목제조업 무정지 3월	전제조업무정지 또는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6월	업허가 또는 당해 품목허가 취소	
-제조지시서, 시험지시 서, 제조기록서 또는 시험 성적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		전제조업무정지 또 는 당해품목제조업 무정지 3월	전제조업무정지 또는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6 월	업허가 또는당해 품목허가 취소	
- 작성된기준서 및 지시 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 니한 때		전제조업무정지 또 는 당해품목제조업 무정지 1월	전제조 업무정 지 또는 당해품 목제조업무정지 3월	전제조 업무정지 또는 당해품목제 조업무정지 6월	업허가 또는 당해품 목허가취소
- 기타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위반 한 때			전제조 업무정 지 또는 당해 품 목제조업무정지 1월		전제조 업무정지 또 는 당해 품목제조업 무정지 6월
마. 제46조제2항의 규정 에 위반한 때		전품목 수입금지 또 는 당해품목수입금 지 1월	전품목 수입금 지 또는 당해품 목수입금지 3월	또는 당해품목수	전품목 수입금지 1 년 또는 당해품목 수입허가취소
					l



〈신·구조문 대비표〉

제40조(제조업자의 준수사항)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제39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.

1. 내지 5. (생 략)

6. 어린이의 약물사고방지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용기 나 포장을 사용한 것.

〈신 설〉

제	40조	(제	조	업	자	의	준	수	사	항	
1)-							 				

1. 내지 5. (현행과 같음)

6.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소아용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계량컵, 계 량스푼 등을 사용할 것

〈신 설〉

제75조의2(안전용기·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) ①법제 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안전용기0104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약품조제용은 제외한다.

- 1. 1회 복용량이 철로서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또는 그 염류가 함유된 경구로 투여되는 의약품(이하 "경구용의약품"이라 한다)
- 2. 아스피린 함유 경구용의약품
- 3. 낱알모음포장 또는 1병중 아세트아미노펜으로서 1그 램 초과 함유 경구용의약품
- 4. 낱알모음포장 또는 1병중 이부프로펜으로서 1그램 초과 함유 경구용의약품
- 5. 어린이의 연령별 용법 · 용량이 설정된 내용액제
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
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5세
 이하 어린이가 일정 시간내에 개봉하기 어렵도록 설계 ·
 고안된 용기 또는 포장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.